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30
----------	-----

제출년월일 : 2019. 0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화, 공동화 등 농업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나.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에 5개사업 4.9억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3.28.~2019.4.17.)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2019.3.13. 기획감사실-3331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3.13. 기획감사실-3331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일부반영(2019.3.14. 주민복지과-18937)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
 - 나.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3.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

인 생산·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창업 이후 단계별 교육, 컨설팅 등 지원
2. 정착초기의 생활비 부담 지원
3. 사업자금 지원
4.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5. 농촌주민과의 유대와 생활환경 적응 문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
2.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3.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
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정책의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 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요인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초기 정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 나. 관련조문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
2.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3.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
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청년농업인의 재정지원을 통한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 해소 및 청년농업인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
- 나. 추계 결과(연간)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491,6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3년차별 차등지원	144,600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20,000,000×4개소×80%	64,000	
청년창업농 판세어지원	3,000,000×1개소×100%	3,000	
청년농업인 희망통장 지원	6,400,000원×25개소	160,000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25,000,000원×6개소×80%	120,000	

- 다. 재원조달 방안 : 2019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축산과장 조용현
연락처	(033) 330 - 1302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537,600	377,600	377,600	377,600	377,600	2,048,0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44,600	144,600	144,600	144,600	144,600	723,000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청년창업농 판셰어지원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청년농업인 희망통장 지원	160,000					160,000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재원 조달		134,934	134,934	134,934	134,934	134,934	674,67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134,934	134,934	134,934	134,934	134,934	674,67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56,666	196,666	196,666	196,666	196,666	1,143,330
	지방세						
	세외수입						
	균 비	356,666	196,666	196,666	196,666	196,666	1,143,33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자부담		46,000	46,000	46,000	46,000	46,000	230,000